

#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06~9
----------	--------

제출연월일	2006. 3. 7.
제출자	거창군수

##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의 규정에 의한 주민조례의 제정절차에 따라 우리군에 접수·수리된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을 작성·부의토록 하여 21C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여 군민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함(안 제1조).
- ‘친환경우수농수축산물’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학교급식 식품비의 예산지원, 지원방법,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교급식 식품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지원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원, 친환경우수농수축산물 사용
-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학교급식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친환경우수농수축산물의 원활한 공급

## ■ 관련(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3(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9(조례안의 작성 및 지방의회에의 부의)

##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와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초· \_\_\_\_\_ 중·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도모 및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③“**친환경우수농수축산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인증을 필하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2.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
3.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
4.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 처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5.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6. 제1호 내지 제4호의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가공식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제3조(예산 지원 등)** ①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교급식 식품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 대상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초·중·고등학교로 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군수는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우수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해당품목이 없거나 생산량이 모자라는 등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식재료인 경우 ‘우수농수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 경비 분담 방법,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④직영급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가운데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비 지원을 보류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거창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급식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운영 계획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관리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전략사업추진단장, 농업지원과장, 보건소장
2. 거창군교육청 학무과장
3. 거창군의회 의원 2인
4. 거창군 소재 학부모단체 1인
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거창군지회 1인
6. 거창군 소재 농민단체 2인
7. 거창군 소재 학교 영양사 1인
8. 거창군 소재 시민단체 1인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학교급식관리센터의 지원)** ①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우수농수축산물 등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 하기 위한 "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급식관리센터"의 운영방법,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에 따라

식재료는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우수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매학기 말일까지 거창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따른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지도·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동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일자 2004.10.13 조례 제1719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집행된 경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